

의안번호	2217328
의 퇴 인	손솔의원
회 답 일	2026.7.1.
추계번호	26C1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 (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u>인공임신중지</u>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제1항) - 요양급여 범위에 인공임신중지 명시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 (요양급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가 실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 대상에 '인공임신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며²⁾,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다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 급여 대상이 되는 인공임신중지의 범위, ② 시행 건수, ③ 수가에 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급여 대상 범위)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인공임신중지를 추가하였으나, 급여 대상이 되는 인공임신중지의 범위·요건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로 급여 대상에 포함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은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4.)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지 급여화에 대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관련 법령·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등 공적 예산을 통한 지원은 법체계 정비 후 허용범위 내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급여화 범위와 시기 및 구체적 계획을 현시점에 확정할 수 없음

-
-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2)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4)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표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구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임신 24주 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등

- (수가) 개정안상 ‘인공임신중지’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중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거나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가는 별도의 결정체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 수가([표 2] 참조)를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움
 - 신규 행위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고시함

[표 2] 인공임신중절수술 수가(2026년)

(단위: 원)				
분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임신 8주 이내	137,090	131,130	125,170	136,000
- 월경조절술(MR)을 시행한 경우	96,380	92,190	88,000	95,610
임신 8주 초과 - 12주 미만	166,760	159,510	152,260	165,420
임신 12주 이상 - 16주 미만	218,100	208,620	199,130	216,360
임신 16주 이상 - 20주 미만	280,460	268,270	256,070	278,230
임신 20주 이상	308,180	297,780	281,380	305,710

주: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료: 보건복지부

- (시행 건수)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거나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현황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급여화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시행 건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급여 현황은 [표 3]과 같음

[표 3]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수술 급여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일)

요양개시년도	실인원수	금액	총 입(내)원일수
2023	2,405	619	6,830
2024	2,572	682	7,741
2025	2,516	770	7,250

주: 1.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진료분까지 포함(심사년월 2026년 3월까지)
 2.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 기준 행위 분류번호 자-445(인공임신중절수술) 수가 실인원수, 금액(가산포함금액), 총 입(내)원일수
 자료: 보건복지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